

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 「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」 참여기업 3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0일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

사업 개요

- ☐ 사업목적 :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진출 및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지원
- ☐ 지원대상 : 소상공인
- ☐ 지원규모 : 1,350개사 내외(예비선정 포함)
- ☐ 지원내용

*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세부사업명			지원내용
소상공인 지원한도 적용*	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①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- 온라인 플랫폼 내 단독딜 및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
		② 로컬상품관 입점지원	- 지방정부 지역물 내 로컬상품관 개설 및 상품 판매·마케팅 지원

* 기존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통합신청(메뉴판)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1개사당 지원한도 600만원 내 선정 가능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- ☐ 지원 대상·상품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

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

<지원 제외대상>

구 분	내 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<붙임2> 참조
휴·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대표자(소상공인)의 국세·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	○ 대표자(소상공인)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지원제외 상품	○ 해외 수입상품,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* 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

3

신청 및 접수

☐ 신청 기간

세부사업명		모집규모*	신청기간
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①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1,100	'26.7.20.(월) 09:00 ~ 상시모집 (물량마감시까지)
	② 로컬상품관 입점지원	250	

* 1~2차 모집 소상공인 중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** 본 사업 특성상 온라인쇼핑몰 ↔ 로컬상품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하며, 두 사업에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, 신청완료 시간 기준으로 우선 선정

*** 7.20~8.6 신청완료분 8.12(수) 평가, 8.7~8.24 신청완료분 8.28(금)평가 예정

**** 로컬상품관의 경우,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자체물로 자동 배정되며, 지자체물 입점 요건 불충족 시 선정탈락할 수 있음

☐ 신청 방법

- (사업신청) 판판대로(www.fanfandaero.kr)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신청

◦ (제출서류)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상공인확인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
구 분		내 용	비 고
①	사업자등록 증명원	·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국세청 홈택스
②	소상공인 확인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
③	국세 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국세청 홈택스
④	지방세 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정부24
⑤	OEM증명서	·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(해외ODM 불인정)	해당 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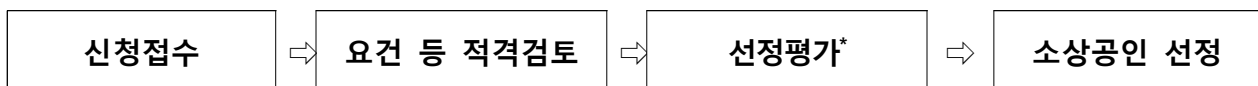
*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(업로드)하며, 온라인 사업 신청 시,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(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) 제출 불필요

** 단,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
(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)

**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7.20일이면 유효기간이 7.20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**** 서류보완 : 사업신청일 內 서류보완 가능, 신청일 이후 보완 불가.

□ 선정 절차



*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

**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정

*** 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예비 선정처리하며,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,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음(단, 예비순위 미공개)

****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

□ 평가일정

구 분	모집기간	선정평가일	최종선정일
3차 신청	7.20 09:00 ~ 8.6 23:59	8.12.(수)	선정평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
4차 신청	8.7 00:00 ~ 8.24 23:59	8.28.(금)	

* 단 공고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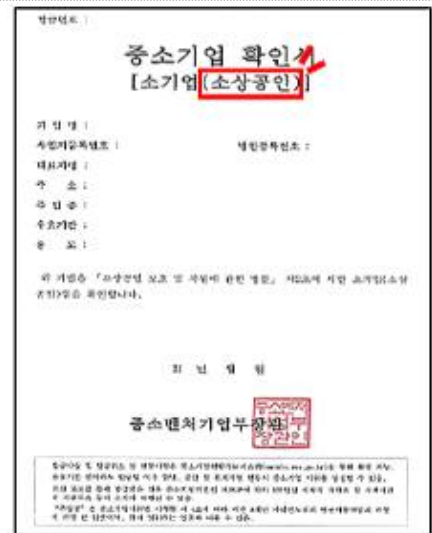
<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>

○ 중소기업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

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- '소기업(소상공인)'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접속
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* 발급문의처

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-6508



☐ 선정평가 기준 : <붙임1>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

☐ 우대사항

○ 가점부여 :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 고
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	해당 시 +5점
② '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(TOPS) 2단계 진출 소상공인	
③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	
④ '23~'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체부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* 한국관광공사 주최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⑤ '25년 우수 특구(탁월·우수 등급)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	
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(coop.go.kr)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	
⑦ '23~'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해당 시 +3점

*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

4

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

- 기존 ‘메뉴판 사업’ 8개 사업*이 지원한도 사업에 해당하며, 세부 사업명과 정부지원금, 자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음

세부사업명	정부지원금	자부담 비율	지원한도
① 상품 개선	2,385,000원	10%	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(1개사 당)
② 상세페이지 제작	1,602,000원		
③ 콘텐츠 제작	2,349,000원		
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1,800,000원	없음	
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3,501,000원	10%	
⑥ SNS 마케팅	2,475,000원		
⑦ 온라인 홍보	2,475,000원		
⑧ 물류 서비스	1,980,000원		

* 정부지원금(90%) 외에 자부담금(10%)과 부가가치세(10%)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

□ 사업선정 및 지원한도 유의사항

< 사업 한도 유의사항 >

- ※ 신청하신 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별 단가 합산 총 6백만원 한도 내 선정 지원 가능하므로, 신청 시 개별 사업의 단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- ※ 사업별 선정일정에 따라 먼저 선정된 사업들의 단가합산 금액이 지원한도(6백만원)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‘탈락’처리됨에 따라, 반드시 선정순서를 참조하시고 신청사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
- ※ 평가 탈락 시 사업단가 만큼의 예산 차감은 없으며, 차기 모집이 있는 경우 재신청가능합니다.

* 단, 선정 이후신청 상품변경은 불가하고,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시, ‘지원해지’ 처리되며, 금액 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.(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)

- (사업신청) 본 사업은 기존 ‘메뉴판 사업’ 기준에 따라, 메뉴판 해

당 사업 8개 내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지원사업 선정 가능

* 단, 개별 신청 대상사업(플랫폼 MD상담회, TV데이터 홈쇼핑 등)의 경우, 판판대로 내 별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

◦ (사업선정) 지원한도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

* (지원한도)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(국비)를 합산하여 최대 **6백만원**을 초과할 수 없고,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

◦ (우선순위) 본 사업 포함 3차 모집 사업에 중복 선정 및 한도 초과시 선정평가일 기준 우선 선정, 사업 포기시 한도 복구되지 않음

<참고 : 지원사업별 모집 일정>

사업명			모집일정	평가일
①	물류서비스		(3차) 7.16(목) ~ 7.30(목) (4차) 7.31(금) ~ 8.23(일)	7.31(금) 8.26(화)
②	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온라인쇼핑몰	(3차) 7.20(월) ~ 8.6(목)	(3차)8.12(수)
		로컬상품관	(4차) 8.7(금) ~ 8.24(월)	(4차)8.28(금)
③	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	(3차)7.20(월) ~ 8.9(일) (4차)8.10(월)~8.30(일)	8.13(목) ~ 8.14(금) 9.3(목)~9.4(금)
④	상품개선		7.21(화) ~ 8.5(수)	8.18(화)
⑤	상세페이지 제작		7.21(화) ~ 8.5(수)	8.19(수)
⑥	콘텐츠 제작지원		7.21(화) ~ 8.5(수)	8.20(목)
⑦	SNS마케팅		7.27(화) ~ 8.10(월)	8.25(화)
⑧	온라인 홍보		7.27(화) ~ 8.10(월)	8.26(수)

* 예시1(사업신청 잔여한도 250만원) : A 소상공인이 온라인쇼핑몰(7.30 신청 / 8.12 선정) / 상세페이지 제작지원(7. 25신청 8.19 선정) → 선정일이 빠른 온라인쇼핑몰에 선정,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사업 최종 탈락처리

** 예시2(사업신청 잔여한도 500만원 이상) : A 소상공인이 온라인쇼핑몰(7.30 신청 / 8.12 선정) / 상세페이지 제작지원(7. 25신청 8.19 선정) → 두 사업 모두 선정

◦ (지원제한) ❶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* 시,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, ❷'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' 참여 시, 조건부** 중복지원 불가

* 예시) '26, '27, '28년 연속참여 시, '29년부터 지원 불가('26년부터 적용)

** '26년 '온라인 브랜드 육성사업(TOPS 프로그램)'을 통해 동일 플랫폼에서 지원받는 경우,

□ 유의사항

-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,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 - * 제출 방식 :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, 매칭 플랫폼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, 기타 설문조사 등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
-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(희망리턴패키지)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,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이후,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,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,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.
- 선정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업체를 선정·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.
- 본 사업 선정평가에 선정되더라도 잔여한도가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 한도 미만일시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 잔여한도 179만원인 소상공인 A가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선정시 한도부족으로 인한 최종 미선정

- 지원한도가 초과되어도 개별 신청 대상사업(플랫폼 MD상담회, TV·데이터 홈쇼핑 등)과 중복참여(지원)가 가능합니다.

* 대상 사업 판판대로 내 별도 확인 필요

☐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<붙임1> 세부사업별 세부 지원내용

①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

- ☐ 세부사업명 :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온라인쇼핑몰)
- ☐ 사업목적 : 온라인쇼핑몰 내 단독딜 및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시장 정착 및 매출 활성화 지원
- ☐ 지원규모 : 1,100개사 내외(예비선정 포함)
- ☐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없음
- ☐ 참여 수행기관 : 15개사

구 분	수행기관	지원 카테고리	구 분	수행기관	지원 카테고리
1	11번가	전 체	9	SSG	식 품
2	G마켓	전 체	10	우체국쇼핑	식 품
3	롯데온	전 체	11	오아시스	식 품
4	그립	전 체	12	페이타랩	식 품
5	H몰	전 체	13	지그재그	패션(의류)
6	현대이지웰	전 체	14	네이버	전 체
7	SK스토아	전 체	15	W컨셉	리빙,뷰티
8	NS몰	전 체			

- * 지원사업 참여시 매칭 희망 플랫폼 3개를 작성하며, 플랫폼별 지원 카테고리 및 물량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플랫폼에 매칭될 수 있음
- ** 플랫폼에 매칭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플랫폼에 입점 및 상품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, 플랫폼별 지원 카테고리 및 물량에 따라 매칭 및 지원 불가할 수 있음
- *** 각 플랫폼별 매칭 수량 초과 시, 신청일자 기준 선착순으로 배정

☐ 지원내용

- (단독딜 지원) 소상공인-온라인쇼핑몰 간 1대1 매칭 후, 쇼핑몰 내 단독딜 구좌에 소상공인 제품 노출 지원
- * 지원사업 신청시 희망 플랫폼 3개사 제출하며, 입점된 플랫폼으로 매칭 및 단독딜 운영

- (소상공인 전용기획전 운영) 온라인쇼핑몰 내 소상공인 제품만 노출시키는 기획전을 개설·운영하여 소상공인 제품 노출 확대
 - (특화지원) 플랫폼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안착 및 매출 확대를 위한 특화지원 운영
- * 온·오프라인 교육, 판매 수수료 인하 등 매칭 플랫폼별 지원내용 상이

□ 중복지원 제한

- 유사지원 내용 중복수혜 제한을 위해 '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(TOPS) 2단계 선정기업 확정 이후 해당 소상공인 지원 중단
- * 단, TOPS에 참여 중인 플랫폼이 상이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지속 지원
- 동일 사업 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'온라인쇼핑몰 ↔ 로컬상품관' 중복 선정 불가능
- * 두 사업 모두 신청할시 신청완료 기준으로 최종 선정 예정

<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지원 예시 >



□ 평가 항목

평가항목	평가지표	타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시장 경쟁력(25점)	시장현황에 따른 제품경쟁력	13	11	9	7	5
	마케팅 역량	12	10	8	6	4
상품 경쟁력(25점)	보유기술의 차별성	13	11	9	7	5
	디자인 경쟁력	12	10	8	6	4
상품 구성(25점)	제품사용에 실용적 구성여부	25	21	17	13	9
가격 적정성(25점)	유사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	25	21	17	13	9
가점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- 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
(우선순위 : 상품경쟁력 > 시장경쟁력 > 상품구성 > 가격적정성)

② 로컬상품관 입점 지원

- ☐ 세부사업명 :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로컬상품관 입점 지원)
- ☐ 사업목적 :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 상품의 지역몰 입점 및 상품 판매, 마케팅 지원
- ☐ 지원규모 : 250개사 내외(예비선정 포함)
- ☐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없음
- ☐ 참여 수행기관 : 5개사

구분	플랫폼명	해당 지역	구분	플랫폼명	해당 지역
1	강원더몰	강원도	4	남도장터	전라남도
2	전북생생장터	전라북도	5	사이소	경상북도
3	농사랑몰	충청남도			

*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플랫폼별 입점 요건을 충족해야 함. 해당 플랫폼 입점요건 불충족시 선정 탈락할 수 있음

- ☐ 지원내용
 - (로컬상품관 운영) 지역몰 內 로컬상품관 개설 및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지원
 - (구매상담회) 지자체몰· 민간 플랫폼 MD와 지역 소상공인을 매칭하여 구매상담회 개최 및 지원*

* 사업 선정 후 지역별 구매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시 별도 신청해야 함(지역별 일정 상이)

- ☐ 중복지원 제한
 - 동일 사업 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'온라인쇼핑몰 ↔ 로컬상품관' 중복 선정 불가능
 - * 두 사업 모두 신청할시 신청완료 기준으로 최종 선정 예정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지역 연관성 (25점)	지역 內 주요 사업장 운영여부	13	11	9	7	5
	지역 대표 상품 가능성	12	10	8	6	4
상품 차별성 (25점)	상품의 독창성	13	11	9	7	5
	상품의 품질	12	10	8	6	4
상품 시장성 (25점)	상품의 시장지배 가능성	25	21	17	13	9
발전 가능성 (25점)	지원사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	25	21	17	13	9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
(우선순위 : 지역연관성 > 상품차별성 > 상품시장성 > 발전가능성)

<붙임2>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 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